

1. 의결주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의 구간을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피해등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인정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그 점수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1~5등급 및 등급 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표 신설)

* (1등급) 90점 초과~100점, (2등급) 70점 초과~90점, (3등급) 50점 초과~70점, (4등급) 30점 초과~50점, (5등급) 10점 초과~30점, (등급 외) 0점~10점

나.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4개 지표를 고려하여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규정(별표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에 관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예정기간 등 피해의 중증을 나타내는 지표를 평가(이하 “중증도 평가”라 한다)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등급 기준 및 중증도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등급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오염구제심의회에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피해등급 기준 및 중증도 평가 방법(제16조의2제2항 관련)

1. 피해등급 기준

가. 중증도 평가 점수에 따른 피해등급

피해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
1등급	90점 초과 100점 이하인 경우
2등급	70점 초과 90점 이하인 경우
3등급	50점 초과 70점 이하인 경우
4등급	30점 초과 50점 이하인 경우
5등급	1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
등급 외	0점 이상 10점 이하인 경우

나. 피해등급 결정의 특례

중증도 평가를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흡연·음주 등 질환 발병에 다른 원인의 영향이 큰 경우 등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중증도 평가 방법

가. 중증도 평가 점수

$$\text{중증도 평가 점수} = D_1 + [(100 - D_1)/100 \times \{(1/2 \times D_2) + (1/4 \times D_3) + (1/8 \times D_4) + (1/16 \times D_5) + \dots + (1/2^{n-1} \times D_n)\}]$$

비고 : D_n 은 나목의 중증도 평가 지표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질환부터 $D_1, D_2, D_3, D_4, D_5 \dots D_n$ 으로 부여

나. 중증도 평가 지표 : 아래의 평가 지표를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평가 지표	정 의
신체증상	피해인정질환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증상의 고통 정도(피해구제 신청 시점 기준)
합병증	2차적으로 더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피해구제 신청 시점 기준)
예후(豫後)	피해인정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할 수 있는 정도
치료예정기간	구제급여대상자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기간

비고: 중증도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권위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피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환경오염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에 관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예정기간 등 피해의 중증을 나타내는 지표를 평가(이하 “중증도 평가”라 한다)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등급 기준 및 중증도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 설>	[별표] <u>피해등급 기준 및 중증도 평가 방법</u> (제16조의2제2항 관련) 1. 피해등급 기준 가. 중증도 평가 점수에 따른 피해등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피해등급</th><th style="text-align: center;">중증도 평가 점수</th></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등급</td><td>90점 초과 100점 이하인 경우</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등급</td><td>70점 초과 90점 이하인 경우</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등급</td><td>50점 초과 70점 이하인 경우</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등급</td><td>30점 초과 50점 이하인 경우</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등급</td><td>1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등급 외</td><td>0점 이상 10점 이하인 경우</td></tr> </tbody> </table>	피해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	1등급	90점 초과 100점 이하인 경우	2등급	70점 초과 90점 이하인 경우	3등급	50점 초과 70점 이하인 경우	4등급	30점 초과 50점 이하인 경우	5등급	1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	등급 외	0점 이상 10점 이하인 경우
피해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														
1등급	90점 초과 100점 이하인 경우														
2등급	70점 초과 90점 이하인 경우														
3등급	50점 초과 70점 이하인 경우														
4등급	30점 초과 50점 이하인 경우														
5등급	1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														
등급 외	0점 이상 10점 이하인 경우														

나. 피해등급 결정의 특례

중증도 평가를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흡연·음주 등 질환 발병에 다른 원인의 영향이 큰 경우 등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중증도 평가 방법

가. 중증도 평가 점수

$$\text{중증도 평가 점수} = D_1 + [(100 - D_1)/100 \times \{(1/2 \times D_2) + (1/4 \times D_3) + (1/8 \times D_4) + (1/16 \times D_5) + \dots + (1/2^{n-1} \times D_n)\}]$$

비고 : D_n 은 나목의 중증도 평가 지표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질환부터 $D_1, D_2, D_3, D_4, D_5 \dots D_n$ 으로 부여

나. 중증도 평가 지표 : 아래의 평가 지표를 각각 0점부터 100점까지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평가지표	정 의
신체 증상	피해인정질환으로 인해 겪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증상의 고통 정도(피해구제 신청 시점 기준)
합병증	2차적으로 더욱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도(피해구제 신청 시점 기준)
예후 (豫後)	피해인정질환을 치료받지 않을 경우 건강이 악화할 수 있는 정도
치료 예정기간	구제급여대상자가 피해인정질환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기간

비고: 중증도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질환에 권위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검증을 받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연 락 처	(044) 201 - 6813